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직무수행 시 이사가 부담하는 의무의 구체화 등〉
■ 박균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700호)

2024.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직무수행 시 이사가 부담하는 의무의 구체화	3
2.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 의무화	7
3.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명칭 변경 및 선임 확대	11
4.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임 확대	18
5. 상장회사에 대한 전자주주총회 도입	2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균택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10. 15.
3. 회 부 일 : 2024. 10.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식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함.

현행법이 이사와 회사의 관계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사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이사에 게 어떠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음.

최근 회사의 지배구조 재편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이루어지는 분할, 합병, 인수, 자산의 변경 등과 관련된 이사의 직무수행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이 아니라, 회사와 일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지고 다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는 계기로 작용하여 외국자본이 국내로 유입되는 기회들을 축소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위임관계에서 비롯되는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직무 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함을 새로이 규정하여 주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ESG 경영의 확립을 위하여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과정에서 집중투표를 의무화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를 확대하며,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 전자 주주총회 방식을 도입하고,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여,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처리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64조 등).

Ⅲ. 검토의견

1. 직무수행 시 이사가 부담하는 의무의 구체화

- 개정안은 직무수행 시 이사가 부담하는 의무로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총주주 이익 보호 노력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82조의3).

현행	개정안
<u>第382條의3(理事의 忠實義務) 理事는 法令과 定款의 規定에 따라 會社를 위하여 그 職務를 忠實하게 수행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제382조의3(이사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 ① 이사는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직무를-----.</u> <u>②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u> <u>③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④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환경과 사회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u>

- 개정안은 직무수행 시 이사가 부담하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사가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함을 명시하는 한편, 수임인으로서 이사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으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현행법에서는 이사에 대하여 회사의 수임인으로서의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제382조¹⁾ 및 제382조의3).

○ 개정안은 최근 회사의 지배구조 재편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분할, 합병 등의 과정에서 이사의 직무수행이 총주주의 이익이 아닌 회사와 일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하고 있음.

- 특히 물적분할과 관련하여, 사업부문의 분리로 인한 주주의 수익권, 처분권이 몰취되는 등 분할회사(분할되는 기존회사)의 소액주주의 주주가치가 훼손되고, 분할회사 소액주주의 권리가 분할회사의 대주주나 경영인 앞으로 이전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음.²⁾

1)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물적분할 및 자회사 상장에 대하여, 회사의 핵심사업부문이 분리되어 별도법인으로 신설되는 경우 ① 핵심사업부문이 분리된 기존회사는 기업가치가 낮아지고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회사의 소액주주는 신설법인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기존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자회사에 대한 소액주주의 견제권 박탈’ 또는 ‘핵심사업부분의 독립 상품화로 인한 소액주주의 수익권, 처분권 몰취’ 등 소액주주의 주주가치가 훼손된다는 비판이 존재하고, ② 기존회사의 소액주주는 신설회사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지만 기존회사의 대주주는 기존회사에 대한 지배력만으로 신설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어 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기존회사의 소액주주의 권리가 기존회사의 대주주나 경영인 앞으로 이전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취지의 분석이 있음(류호연·이수환, 물적분할 및 자회사 상장에 따른 소액주주 보호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22, p. 6~7).

□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지분)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 관계를 가지므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이사의 의사결정으로부터 본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사가 직접적으로 주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는 아니지만 직무수행 시 이사가 준수해야 하는 내용으로 총주주의 이익 보호 노력 및 주주 이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 금지를 명시 하였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한 주주의 이익은 일반적·추상적이고, 위임의 구조상 이사와 주주 사이에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사는 누구의 수임인인가에 관한 논의와 수임인으로서의 이사는 어떤 내용의 의무를 부담하는가에 관한 논의를 구분한 후 총주주에 대한 보호를 이사가 부담하는 의무 내용으로 규정하는 형태를 취한 것으로 보임.

○ 이론적으로는 회사의 이익이 반영된 기업가치가 지분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주주에게 귀속되므로 결국 회사의 이익과 주주 전체의 이익은 일치한다는 점에서 직무수행 시 이사가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사의 지위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의무를 재확인하고 선언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주주 이익의 보호 관련 사항을 직무수행 시 이사가 부담하는 의무 내용의 일부로 포섭하여 일반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사의 직무

수행으로 인한 소수주주의 이익 침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반복되는 개별규정의 개정 논란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총주주의 이익”의 의미가 무엇인지 불분명하여 이사의 의무 위반 시 제기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책임을 고려할 때 명확성의 원칙 위배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법무부는 현재 이사의 충실의무 등 의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학계, 경제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으므로 관계부처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실용적인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2.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 의무화

-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의 상장회사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2조의7 제3항).

현행	개정안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① · ② (생략) ③ 제2항의 <u>상장회사가</u>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u>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u> ④ (생략)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상장회사는 제382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배제할 수 없다.</u> <u><단서 삭제></u> ④ (현행과 같음)

- 개정안은 대규모 상장회사³⁾의 경우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소수주주의 의견을

3)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②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3조(집중투표에 관한 특례의 대상 회사) 법 제542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대변하고 대주주를 견제하려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제고하고, 경영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현행법에서는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의결권을 갖고, 이 의결권을 이사 후보자 1명 또는 수 명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382조의24).
-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사의 선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1998년 「상법」 개정(법률 제5591호, 1998. 12. 28. 공포 및 시행)을 통하여 도입되었으나⁵⁾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제도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됨.
- 이에 2009년 「상법」 개정(법률 제9362호, 2009. 1. 30. 공포 및 2009. 2. 4.

4) 제382조의2(집중투표) ①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⑥ 제2항의 서면은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법률 제5591호 상법 일부개정법률(1998. 12. 28. 공포 및 시행)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라. 집중투표제도의 도입

소수주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사의 선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2인 이상 이사의 선임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의 의결권을 갖도록 하고 이를 이사후보자 1인에게 집중하여 행사할 수 있는 집중투표의 방법에 의하여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法 第382條의2).

시행)을 통하여 상장회사의 경우 집중투표 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례가 마련됨(제542조의7⁶⁾).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상장기업에서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어⁷⁾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대주주에 대한 견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개정안은 사적자치의 원칙 침해 등의 논란을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경영건전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대규모 상장회사에 한정하여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집중투표제는 “1주 1의결권 원칙⁸⁾”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제도라는

6)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① 상장회사에 대하여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제542조의8제5항에서 같다)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3항에 따른 집중투표 배제에 관한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의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7) 2023년 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 중 4.9%가 집중투표를 채택하고 있음(대한상공회의소).

8) 제369조(의결권) 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 1주 1의결권 원칙은 주주의 이해관계와 의결권 사이의 비례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는 것이 통설이고 판례임(송옥렬, 상법강의 제12판, 2022, p.933).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회사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자본다수결원칙과 배치될 수 있으며 회사 내부의 사적자치 영역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는 의견이 있음.

- 집중투표제로 인하여 이사회 의사결정 행동이 초래되고, 경영에 관한 중요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성이 증가하며, 의사결정의 지연과 기업경영 효율성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 법무부는 특정 투표방식(집중투표제)을 강제하는 것은 기업 의사결정의 자율성,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경제계 의견이 있고, 주요국 가운데 집중투표제를 강제하는 입법례도 찾기 어려우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명칭 변경 및 선임 확대

-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경우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의무 비율을 이사 총수의 1/4에서 1/3으로 높이려는 것임(안 제400조, 제542조의8 등⁹⁾).

현행	개정안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① (생략)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u>사외이사의</u>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 ----- ----- ----- --- <u>사외이사 및 제542조의8제1항의 독립이사의</u> ----- -----. ----- ----- ----- -----.
제542조의8(<u>사외이사의</u> 선임) 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제542조의8(<u>독립이사의</u> 선임) ① ----- -----

현행	개정안
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u>사외이사</u>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u>사외이사</u>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의 <u>사외이사</u>는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 6. (생략) 7. 그 밖에 <u>사외이사로서의</u>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의 상장회사는 <u>사외이사</u>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u>사외이사</u>의 수가 제1항의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	-----3분의-----<u>독립이사</u>(제382조제3항의 <u>사외이사</u>로서 <u>사내이사</u>, <u>집행임원</u> 및 <u>업무집행지시자</u>로부터 <u>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u>)-----. <u>독립이사</u>는-----. ② -----<u>독립이사</u>는-----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u>독립이사로서의</u>----- ----- ----- ----- ----- ③ -----<u>독립이사</u>----- -----<u>독립이사</u>----- ----- ----- ----- -----

현행	개정안
서 제1항의 요건에 합치되도록 <u>사외이사</u>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상장회사는 <u>사외이사</u>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제393조의2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u>사외이사</u> 후보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u>사외이사</u> 후보추천위원회는 <u>사외이사</u>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u>사외이사</u>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u>사외이사</u>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u>사외이사</u> 후보추천위원회가 <u>사외이사</u>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의6제1항·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해	----- <u>독립이사</u>-----. ④ ----- <u>독립이사</u>----- ----- -----<u>독립이사</u>----- ----- -----<u>독립이사</u>----- -----<u>독립이사</u>----- ----- -----. ⑤ ----- -----<u>독립이사</u>----- <u>이사</u>-----<u>독립이사</u>----- <u>립이사</u>----- ----- -----<u>독립이사</u>----- -----<u>독립이사</u>----- ----- ----- ----- ----- ----- -----

현행	개정안
당 연도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추천한 <u>사외이사</u>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 ----- <u>독립이사</u> ----- -----.

□ 개정안은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명칭을 변경하고, 사외이사 선임을 확대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지배주주와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시·견제하고 주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제도의 도입 목적을 실효적으로 실현하고, 기업경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현행법에서는 사외이사(社外理事)를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라고 정의하면서 상장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제382조제3항¹⁰⁾ 및 제542조의8).

-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의무는 상장법인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9) 본문에는 사외이사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주요조문의 신·구조문대비표만 표기하고, 전체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자료 참조

10)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위하여 2000년 「증권거래법」 개정(법률 제6176호 2000. 1. 21. 공포, 2000. 4. 1. 시행)을 통하여 법률상 도입된 것으로¹¹⁾, 2009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증권거래법」이 폐지됨에 따라 이 법으로 이관됨(법률 제9362호, 2009. 1. 30. 공포, 2009. 2. 4. 시행).

<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의무 개관 >

구 분	선임의무 비율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의 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 벤처기업 회생절차 개시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상장회사 신규 상장회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해산을 결의한 상장회사	선임의무 면제
일반 상장회사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	3명 이상 + 이사 총수의 과반수

※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함(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제외, 제383조제1항))

- 개정안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회사의 외부자라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의미로 독립 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별도로 정의규정을 마련하여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사외이사는 기업의 외부에서 초빙되어 회사관계, 즉 지배주주나

11) 1998년 유가증권상장규정 개정을 통해 최초 도입됨.

경영자로부터 독립성을 가지는 이사라는 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독립이사와 동일한 지위에서 같은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를 구분하여 명칭을 달리 사용함으로써 비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대한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경영의 건전성이나 투명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이미 사외이사 선임의무가 강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든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확대하는 것은 이사회 구성에 관한 기업의 자율성 및 회사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회사 내부의 사적자치 영역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¹²⁾
- 겸직한도 제한¹³⁾ 등 법률상 결격사유에 더하여 회사외부자로서 사외이사가 가지는 해당 기업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정보의 취득·분석에 관한 상대적 취약성 등으로 인하여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사외이사 선임의무 확대는 이사회 구성 및 회사 운영에 차질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 법무부는 기존의 사외이사를 다른 용어로 바꾸려는

12) 사외이사 선임의무 의무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제635조제3항제1호).

13) 사외이사의 겸직한도 제한으로 인하여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자는 상장회사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음(「상법」 제542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것인데, 변경의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법령의 표현과
불일치하여 실무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임 확대

☐ 개정안은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 중 적어도 2명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2조의12).

[illegible]

현행	개정안
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 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 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 는 <u>사외이사가</u> 아닌 감사위원 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 에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 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 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 ⑧ (생략)	----- ----- ----- ----- ----- -----<u>독립이사</u>----- ----- ----- ----- ----- -----. ⑤ ~ ⑧ (현행과 같음)

□ 개정안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임을 확대함으
로써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의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¹⁴⁾, 감사위원회 설치

14)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감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37조(감사위원회) ① 법 제542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장회사는 제외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인 상장회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
용받는 상장회사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상장회사
4.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한 상장회사(신규상장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의무가 있는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위원 선임권한을 주주총회에 부여하면서 원칙적으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먼저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지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적어도 1명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 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의 감사제도가 독립성이 미약하다는 비판¹⁵⁾을 감안하여 1999년 「상법」 개정(법률 제6086호, 1999. 12. 31. 공포·시행)을 통하여 도입된 제도임.
-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설치의무는 2000년 「증권거래법」 개정(법률 제6176호 2000. 1. 21. 공포, 2000. 4. 1. 시행)을 통하여 도입된 후 2009년 「증권거래법」이 폐지됨에 따라 이 법으로 이관되면서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해임권이 주주총회에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선임방식을 일괄선출방식(이사 선임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으로 통일함.
- 일괄선출방식의 경우 대주주가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에 영향력을 발휘하여¹⁶⁾ 그 직무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정기주주총회 전일까지만 해당한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5) 감사위원회제도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용되는 제도로서 기업지배구조개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同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사내감사(社內監事)로 인한 감사 기능의 약화에 대한 대안으로 경영자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감사제도의 필요성 제기(법제사법위원회, 의안번호 제152271호 상법중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p.9)

16) 이사 선임 시에는 대주주 의결권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 3% 제한규정*이 실효성이 없음.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최대주주 개별로 의결권 3% 제한,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등의 주식과 합산하여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2020년 「상법」 개정(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공포·시행)을 통하여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제(이사 선임 시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를 도입함.

□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제는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고려하면 분리선임 확대를 통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로 감사위원회 감사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입법방향은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 참고로, 2013년 법무부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모든 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음.¹⁷⁾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감사위원회위원은 이사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의
분리선출은 재산권의 일종인 주주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사적자치의 원칙과 자본다수결원칙에 위배할 우려가 높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분리선임 확대는 그에 대한 우려와 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음.

(제542조의12제4항)

17) 회사의 부담 증가, 경영권 침해 등 우려 제기로 2020년 1명 이상 분리선출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3355호) 제출

○ 현행법에 따른 1명 이상 감사위원회위원의 분리선임은 2020년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당시 기업의 부담 증가 등 재계의 우려를 고려하여 논의한 결과로¹⁸⁾, 분리선출제 도입 후 제도개선을 고려할만한 사회·경제적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 법무부는 분리선임을 2명으로 확대할 경우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이사 2명에 대하여 이사 선임 시부터 3% 초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게 되는데, 3% 초과 의결권 제한 제도는 자본다수결 원칙의 예외이고, 이사 선임에 있어 주요주주 의결권 제한을 확대할 경우 경영상 부작용을 우려하는 경제계 의견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8) 2020년 12월 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모든 감사위원회위원을 분리선출하는 경우 회사의 부담이 상당히 커질 우려가 있고, 감사위원회위원은 이사이므로 회사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우선 1명이라도 분리선출하도록 제도를 도입한 후 제도의 정착 상황을 고려하여 분리선임 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자는 취지의 발언[제382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제8차)(2020년 12월 7일) p.31~33 참조]

5. 상장회사에 대한 전자주주총회 도입

- 개정안은 상장회사에 대하여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5).

현행	개정안
第364條(召集地) 總會는 定款에 다른 定함이 없으면 本店所在地 또는 이에 隣接한 地에 召集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본점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하여야-----.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제542조의14(전자주주총회) ①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③ <u>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u> ④ <u>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등은 제364조에 따른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u> ⑤ <u>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363조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에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뜻과 출석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u> ⑥ <u>제1항과 제5항에 따른 전자통신수단, 전자주주총회 개최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542조의15(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u> ① <u>상장회사가 제542조의14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가 총회의 의사 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u> ② <u>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u>

<신설>

현행	개정안
	<u>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u> ③ <u>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 및 그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u> ④ <u>상장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u> ⑤ <u>상장회사는 제4항에 따른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u> ⑥ <u>주주의 질의 방법 및 절차, 의장의 의사진행 등 전자주주총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경우 전자주주총회 개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주의 주주총회 접근성을 향상시켜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전자주주총회의 근거 및 운영방식에 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둠으로써 전자주주총회의 허용 범위 및 운영방식에 관한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고, 물리적 주주총회 원칙으로 인한 주주권 행사의 한계를 극복하며, 총회 출석 저조로 인한 기업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입법방향은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됨.

○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는 현행법상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가 해석상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바¹⁹⁾, 개정안에서는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에 대한 주주권 침해 지적²⁰⁾을 감안하여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임.

19) 현행법상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는 개최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소집지에 관한 제364조에서는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주주총회가 특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개최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임[서지원,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입법동향 및 사례 연구 -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일본의 입법동향과 사례를 중심으로 -, 법학논문집 제46집제1호(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p.167].

20)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에 대해서 ①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주주들이 소외될 수 있고, 비대면 온라인 회의방식으로 인하여 현장주주총회에 비해 경영진과 주주 간 또는 주주 상호 간의 소통이 제한될 수 있으며, 회의장 분위기가 충분히 전달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② 회사가 설계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주주들이 경영진이 설정한 틀을 벗어날 수 없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의결권 대립을 벌이는 주주의 발언기회를 제한하거나 경영진에 불리한 주주의 질문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경영진의 답변이 부족하거나 질문 의도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할 때 추가적 질문 등을 통한 주주의 토론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이승희, 상법상 전자주주총회 도입 방안 검토 -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의 주주권 침해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개혁연구소, 2022, p.3~5).

- 전자주주총회의 유형은 ① 물리적 공간에서 현장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여기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들을 위하여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하여 개최하는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와 ② 현장 주주총회는 개최하지 않고 전자주주총회만을 개최하는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로 구분됨.

○ 개정안은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주총회 소집권한은 이사회에 있으므로²¹⁾ 주주총회의 형태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재량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Opt-out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²²⁾

- 전자주주총회 개최요건 설정방식은 전자주주총회의 개최가 가능함을 원칙으로 하되, ① 회사가 정관에 의하여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Opt-out방식과 ② 회사가 정관에 근거를 둔 경우에만 전자주주총회의 개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는 Opt-in방식으로 구분됨.

○ 우리나라 주주총회는 3월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 주주가 동시에 여러 현장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한편, 2017년 12월에 새도우 보팅 제도가 폐지²³⁾된 이후로는 주주총회의

21) 제362조(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22) 출석형·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주주의 전자통신수단에 의한 참여를 법률상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형태)는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적절하지 못한 운영으로 인한 총회결의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Opt-in방식이 타당하다는 의견(김효정, 전자주주총회의 상법 도입시 그 개최 및 운영에 관한 법적 쟁점, 상사판례연구 제36권제3호, 2023. 9. 30. p.110~111)

23) 소액주주들의 불출석으로 인한 상장회사 주주총회의 불성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주주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의결권 행사를 위임한 것

의결정족수²⁴⁾ 확보 또한 문제되고 있는 상황임.

- 2024년 2월·3월에 주주총회를 개최한 2,480개 상장회사(유가증권시장 810개사, 코스닥시장 1,370개사)의 주주총회 관련 공시를 살펴보면, 2월·3월 주주총회를 개최한 상장회사의 97.2%가 3월 20일부터 29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정기총회 개최가 가장 많았던 상위 3일(3월 28일 32.3%, 3월 29일 27.4%, 3월 26일 10.3%)의 개최 비율이 70.0%임.²⁵⁾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의 상장회사에 대한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와 관련하여, 법률상 출석의 효과가 인정되는 형태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회사를 찾기 어려운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제도 도입과 동시에 의무화하는 경우 전자주주총회 개최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현실적 문제를 검증할 기회가 없어 회사가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법률적 위험의 정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으로 의제하던 제도로, 주주권 훼손과 의결권 행사의 왜곡 등 논란이 지속되어 2013년에 폐지가 결정되고 2017년 12월에 4년의 유예기간 종료

24)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25) 황현영, 2024년 주주총회를 통해 살펴본 주주권의 보호 현황과 과제, 자본시장포커스 2024-9호, 자본시장연구원, 2024. 4. 29. p.2~3

- 12월 결산 상장회사 총 2,267개사(유가증권시장 780개사, 코스닥시장 1,487개사) 중 2023년 비대면(온라인) 형태의 주주총회를 개최한 회사는 34개사(유가증권시장 29개사, 코스닥시장 5개사)로, 2022년 28개사 대비 증가하였고, 34개사 모두 참가형·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현장주주총회의 개최와 병행하되, 총회의 의사진행 실황을 중계하는 형태로서 주주의 출석 및 실시간의결권 행사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형태)를 개최함.²⁶⁾
- 한편,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을 시행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에 따른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안정성 검증 등 준비에 필요한 유예기간이 충분히 주어진 것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전자주주총회 개최와 운영에 관한 위임과 관련하여,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요건은 전자주주총회제도의 핵심적 내용이라 할 수 있고, 전자주주총회에서의 질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주주권 보장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유보의 원칙 및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적절하게 위임되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전자주주총회 개최와 운영과 관련하여,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가 총회의 의사 진행 및

26) 2023. 4. 26.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보도자료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회사 2023년 정기주주총회 운영 현황 및 주요 특징” p.3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안 제542조의14제1항 및 제542조의15제1항)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요건, 주주의 질의 방법·절차 및 의사진행 등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안 제542조의14제6항 및 제542조의15제6항).

□ 개정안에 대하여, 법무부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 정관을 통해 병행전자주주총회뿐 아니라 완전전자주주총회를 선택적으로 허용하여 기업 의사결정의 자율성·효율성을 도모하고 있고, 완전전자주주총회 시 주주의 질문권 침해 우려는 시행령에서 전자주주총회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주주의 질문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55

참고

사외이사 명칭 변경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① (생략) 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사 외이사 및 제542조의8제1항의 독 립이사의----- -----. ----- ----- ----- -----.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① · ② (생략) ③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회사가 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독립이사----- ----- -----. ----- ----- ----- -----.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① 상	제542조의8(독립이사의 선임) ① -

현행	개정안
상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u>4분의 1</u> 이상을 <u>사외이사</u>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u>사외이사</u>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의 <u>사외이사</u>는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 6. (생략) 7. 그 밖에 <u>사외이사</u>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의 상장회사는 <u>사외이사</u>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u>사외이사</u>의 수가 제1항의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합치되도록 <u>사외이사</u>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상장회사는 <u>사외이사</u>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 ----- -----<u>3분의</u>----- -----<u>독립이사</u>(제382조제3항의 <u>사외이사</u>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u>독립이사</u>는-----. ② -----<u>독립이사</u>는----- ----- ----- ----- -----. 1. ~ 6. (현행과 같음) 7. -----<u>독립이사</u>로서의----- ----- ----- ----- ----- ③ -----<u>독립이사</u>----- ----- -----<u>독립이사</u>----- ----- ----- ----- ----- -----<u>독립이사</u>----- -----. ④ -----<u>독립이사</u>-----

현행	개정안
제393조의2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 <u>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u> ”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u>사외이사</u> 후보추천위원회는 <u>사외이사</u> 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 <u>독립이사</u> ----- ----- ----- <u>독립이사</u> ----- <u>독립이사</u> ----- -----.
⑤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u>사외이사</u> 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u>사외이사</u>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u>사외이사</u> 후보추천위원회가 <u>사외이사</u>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의6제1항·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해당 연도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추천한 <u>사외이사</u>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⑤ ----- ----- <u>독립이사</u> ----- <u>독립이사</u> ----- ----- ----- <u>독립이사</u> ----- <u>독립이사</u> ----- ----- ----- ----- ----- ----- ----- ----- ----- ----- <u>독립이사</u> ----- -----.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① (생략)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u>사외이사</u> 일 것	2. ----- <u>독립이사</u> 일---

현행	개정안
③ 제542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상장회사의 <u>사외이사</u>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④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위원인 <u>사외이사</u>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u>사외이사</u>의 수가 다음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1. 2. (생략)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u>사외이사</u>	③ ----- ----- -----<u>독립이사</u>----- ----- -----. ④ ----- <u>독립이사</u>의----- -----<u>독립이사</u>의----- ----- ----- ----- -----. 1. 2. (현행과 같음)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 -----<u>독립이사</u>

현행	개정안
간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 ⑧ (생략) 第635條(過怠料에 處할 行爲) ① · ② (생략)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4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u>사외이사</u>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42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u>사외이사</u>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u>사외이사</u>가 총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u>사외이사</u>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42조의8제5항에 따라 <u>사외이사</u>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4. ~ 8. (생략) ④ (생략) ④ (생략)	간----- ----- ----- ----- ----- -----. ⑤ ~ ⑧ (현행과 같음) 第635條(過怠料에 處할 行爲)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u>독립이사</u>----- ----- 2. ----- <u>독립이사</u>----- -----<u>독립이사</u>----- ----- ---<u>독립이사</u>----- ----- 3. -----<u>독립이사</u>를----- 4. ~ 8.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